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970
----------	-------

발의연월일 : 2025. 6. 20.

발 의 자 : 박희승 · 윤준병 · 이해식
박민규 · 남인순 · 이재정
한민수 · 오세희 · 김한규
강득구 · 박상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법무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년사범의 낮은 학업성취도 및 관련 기관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소년원에서의 학교 교육은 미진한 상황임. 소년원학교에서 전임 교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 그 수가 부족하여 교정직 공무원이 수업을 진행하거나 타 교과목의 전임교원이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교육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호소년의 학업수준이나 보호기간의 편차에도 불구하고 통합학급으로 운영되어 실질적으로 교육이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기도 함.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년원학교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일선 소년원학교에서 교육부 및 교육청과의 협업을 타진하고 있으나, 일선 소년원학교가 교육부 및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하거나 지원을 요청하고자 할 때 해당 사안과 관련된 부서를 직접 파악하여 각각 접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소년원학교 측의 요청사항이 교육부 및 교육청 내에서 공유되지 않아 협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이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무부에 소년원학교교육정책협의회를 두어 소년원학교의 초·중등교육 여건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희승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의안번호 제109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를”을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년원에 설치하는 각종학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의 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소년원학교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 및 교사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제18조의2,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를 “제18조의2, 제31조”로 한다.

제2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4(소년원학교교육정책협의회 등) ① 소년원학교의 교육 여건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소년원학교교육정책협의회(이하 “교육정책협의회”)를 둔다.

② 교육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소년원학교 교육정책 수립 및 추진
2. 소년원학교 교육정책 추진상황 점검 및 이행 관리
3. 그 밖에 소년원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정책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무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소년원학교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4. 대통령령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관계 전문가 3명

④ 교육정책협의회의 공동의장은 법무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한다.

⑤ 교육정책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간사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소년원학교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소년원학교로 본

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 법무 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에 「초·중 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 4호까지의 학교(이하 “소년원 학교”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u><신 설></u>	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 ① -- ----- -----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를----- -----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년원에 설치하는 각종학교 (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의 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 또 는 소년원학교 소재지의 특별 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 및 교사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을 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 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① 소년원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① ----- -----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8조,
제18조의2, 제30조의2, 제30조
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부터 제34조까지, 제34조의2 및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략)

<신설>

제18조의2, 제31조-----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의4(소년원학교교육정책협
의회 등) ① 소년원학교의 교
육 여건을 종합적이고 체계적
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법무부
에 소년원학교교육정책협의회
(이하 “교육정책협의회”)를 둔
다.

② 교육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소년원학교 교육정책 수립
및 추진

2. 소년원학교 교육정책 추진상
황 점검 및 이행 관리

3. 그 밖에 소년원학교 교육 여
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

③ 교육정책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무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소년원학교 소재지의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4. 대통령령에 따라 법무부장관

이 임명하는 관계 전문가 3명

④ 교육정책협의회의 공동의장

은 법무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한다.

⑤ 교육정책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

명을 두며, 법무부 범죄예방정

책국장을 간사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정책협

의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